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 10.19.~10.30. 사업장 자율점검 후 11.2.~11.13.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 실시
- 화기작업·가연물·정전기·비상대피 등 화재·폭발 핵심 안전조치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②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③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④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16명(100%)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4명에서 9명으로 5명(125%) 증가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화재·폭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는 14명이 사망하고,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화재에서도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최근 화재·폭발 관련 중대재해 사례

- ❖ [화재] '26.3.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 사망
- ❖ [폭발] '26.6. 대전 방산업체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 사망
- ❖ [화재] '26.8.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 사망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OPS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12월에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❶ 따뜻한 옷 ❷ 따뜻한 쉼터(휴식) ❸ 따뜻한 물 ❹ 작업시간대 조정 ❺ 119 신고

붙임.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OPS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일터 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근배 (044-202-8882)
			주무관	박현덕 (044-202-8945)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윤현욱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044-202-8969)
			주무관	김성도 (044-202-8967)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유종호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2026-전문기술실-795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화재·폭발 원리

가연물이 산소, 점화원과 만나는 순간
화재·폭발이 발생합니다.



최근 화재·폭발 사고사례

사례 ① 불꽃·불티 비산



▶ '25. 2. 14.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용접 불티가 비산되어 화재 발생

사례 ② 인화성 가스·증기



▶ '26. 3. 4. 탱크로리 상부의 유증기 배관 부위에 용접 작업 중 유증기에 불꽃이 점화되어 화재 발생

사례 ③ 정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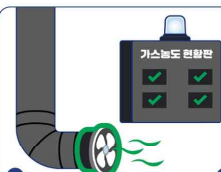
▶ '26. 1. 8. 톨루엔을 배한 용기에 투입하던 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스파크에 의해 화재 발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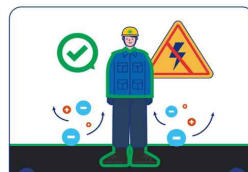
■ 화재·폭발사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불티
비산방지조치



02
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03
정전기
방지



04
대피로
확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점검자 :

점검일 :

/ /

점검장소 :

분류	자율점검 항목	관리감독자	작업자
인화성·가연성 물질	☒ 인화성 물질 취급 시 가습·제전장치 또는 도전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조치를 하였습니까? (규칙 제325조)		
	☒ 인화성 가스나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는 수시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칙 제231·232·241·278·296조)		
	☒ 인화성·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화기 및 비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불꽃·불티 등의 점화원과 차단·격리하고 있습니까? (규칙 제225·231·236·239·242·311조)		
화재 위험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 전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미리 제거하였습니까? (규칙 제240·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였습니까? (규칙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있습니까? (규칙 제241조의2)		
화학 설비 등	☒ 화학설비 등을 사용하기 전 설비와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 점검하였습니까? (규칙 제277조)		
	☒ 화학설비의 이상반응 등에 대비하여 계속·경보·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칙 제273·274·275조)		
	☒ 설비의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작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칙 제261·262·263조)		
비상 조치	☒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통로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칙 제17·18조)		
	☒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였습니까? (규칙 제243조)		
	☒ 화재예방 및 비상대피에 관한 안전교육과 비상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법 제29조, 규칙 제279조)		

※ 사업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 ①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합니다.
- ② 인화성 가스·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 ③ 가습·제전장치 사용 등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조치를 실시합니다.
- ④ 소화설비 설치 및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합니다.

[향후 조치 필요사항(필요시 작성)]